

엘리트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육성체계 선진화 권고

I. 권고

인류가 오랜 역사를 거쳐 이룬 모든 문화가 그렇듯이, 스포츠는 아름답다. 인류는 전인미답의 경지에 도달하는 선수들에 대하여 숭고한 찬사를 보내왔다. 놀라운 상상력으로 스포츠의 경이로움을 선사할 때 우리는 그 비범한 우아미에 열광하였다. 쇼트트랙 계주 16명 선수들의 아름다운 곡선, 네트를 절묘하게 넘어가는 테니스공의 우아한 궤적, 순간을 영원으로 만드는 피겨스케이팅의 스파이럴. 또한 눈물도 함께 흘렸다. 뜻을 이루지 못한 선수가 매트에 누워 경기장 천정을 하염없이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뜨거운 눈물에서 삶의 비장함마저 느꼈다.

그 뿐인가. 휠체어와 하나가 되어 온몸으로 인간성의 위엄과 스포츠의 고결함을 보여주는 장애인 선수, 가난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보살피는 선수들, 차별에 저항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상처 입은 몸으로 입증해낸 선수들. 모두가 규칙을 지키되 규칙을 초월하여 유한한 인간이 불멸의 가치에 이르러자 하는 숭고한 스포츠의 세계다. 그리하여 우리는 스포츠를 즐길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지도자와 선수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존경한다.

한편, 스포츠는 역사와 분리된 진공상태의 행위가 아니라 역사의 한복판에서 발전하였거니와 그리하여 스포츠의 즐거움과 가치가 시대마다 달라지고 때로는 왜곡되기도 하였다. 특유의 비언어적 소통 방식과 비적대적 경쟁의 성격으로 인하여 스

스포츠는 근대 국가 수립과 세계적 차원의 교류에 이바지하였지만 동시에 세계 곳곳에서 국가주의의 표상이 되어 승리지상주의의 폐단을 낳기도 하였다.

이제 시대는 달라졌고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달라졌으며 세계적 차원의 스포츠 가치도 급변하고 있다. 기존의 스포츠종목, 스포츠 교육, 스포츠 미디어, 스포츠 콘텐츠, 스포츠 산업 등이 새롭게 변하거나 확산되고 있다. 정치, 경제, 문화, 인종, 젠더, 환경 등의 21세기적 의제들이 스포츠 내부로 들어와 의미 있게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국제 스포츠가 고유의 국가간 경쟁과 더불어 인류 보편의 가치와 합류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엘리트선수들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펼쳐질 전망이다.

바로 그 때문에 과거 개발도상국 단계의 ‘국위선양’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국제 관계 등에 있어 세계 10위권 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한국 스포츠의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도 인구 변동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수 감소, 운동선수 기피 현상 증가, 수준별 선수육성 체계의 미발전, 올림픽 및 국제스포츠 환경 변화 등은 기존의 스포츠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 부응하여 선수들이 보다 안전하고 과학적인 조건에서 훈련하여 성취를 낼 때, 지도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조건에서 자신의 경험과 뛰어난 스포츠과학을 접목하여 의미 있는 성취를 거둘 때, 한국의 스포츠의 지속가능성과 국제 경쟁력은 확보될 것이다. 선수들이 매트에서, 그라운드에서, 코트에서, 필드에서 온몸으로 실천하는 행위 또한 이러한 변화와 혁신에 기반할 때 스포츠에 내재된 가치는 더욱더 고결하게 발현하게 될 것이다.

이에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문경란)는 국가대표 지원체계와 엘리트육성시스템을 면밀히 숙의한 결과, 21세기 국내외 스포츠의 환경 변화와 스포츠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그 제도와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 및 대한체육회에 권고한다.

1. 엘리트스포츠 시스템 개선 권고

1) 진천선수촌 개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진천선수촌의 인권 보장 및 지도자 처우개선, 과학적 지원시스템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 등을 지원한다.

(1) 진천선수촌 인권 보장 강화

- ① 훈련관리지침 및 운영규정 등을 자율적이고 인권적인 내용으로 개선한다. 각 회원종목단체의 국가대표선수 훈련 및 운영 규정도 위 기준에 맞춰 개선한다.
- ② 향후 ‘스포츠인권기구’가 설립될 때까지(위원회 1차 권고) 진천선수촌 인권상담실의 인력을 보강하고 조사 절차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선수촌 내 인권상황을 개선한다
- ③ 국가대표 학생선수의 출석일수, 학사관리 등 학습권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이행한다.
- ④ 국가대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진천선수촌 내 학생선수 학습지원센터를 설립한다. 학습지원센터는 위탁교육기관 및 원소속 학교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학생선수를 위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2) 국가대표 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평가 합리화

- ① 국가대표 지도자가 안정적으로 지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정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보수 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회원종목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 ② 국가대표지도자의 평가기준을 기존 경기실적 중심에서 장기적 비전, 과학적 훈련, 기본적 인권 존중 및 학습권 보장, 선수 만족도 등 종합적 평가지표로 전

환한다. 지도자 평가방식도 상급자평가, 지도자간 평가, 선수평가 등 다면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

- ③ 국가대표지도자의 코칭 전문성 제고, 종목 국제동향 분석, 스포츠 과학자와의 협력 확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진천선수촌 스포츠과학 지원 시스템 강화

- ① 문체부는 국가대표선수를 보다 과학적으로 밀착지원 하기 위해 한국스포츠정책 과학원의 전문 인력과 예산을 보강한다.
- ②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는 국가대표 선수의 합리적인 선발과 효율적인 강화훈련을 위해 스포츠과학자 등이 포함된 종목별 훈련과학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개인 특성별 맞춤형의 과학적 지원을 정기 제공한다.

2)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 개편

- (1) 문체부는 올림픽 등 국제대회 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우수한 경기성과에 대한 포상 성격이므로 그 취지에 맞게 2021년부터 일시금으로 전환한다. 다만, 기존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대상자는 현행대로 연금으로 지급한다.
- (2)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 일시금 완전 전환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올림픽 개최 주기 등을 고려하여 2029년부터 시행하며, 2021년부터 2028년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비율 중 일시금 비율을 연차적으로 높여가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 (3) 올림픽 등 국제대회 메달리스트 위주로 시행돼온 현행 선수지원제도를 더 많은 선수들이 운동을 지속하고 나아가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에 현재 시행 중인 경력 전환 지원, 생활 안정 자금 지원,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대 강화한다.

3) 체육요원제도 관리 강화

- (1) 문체부와 병무청은 대체복무제도의 입법 취지에 따른 체육요원편입 제도를 엄정하게 관리한다.
- (2) 체육요원 편입 조건이 되는 국제대회의 선수 선발에 관련된 위원회는 그 선발 기준 및 선발 과정에서 경기력 외에 병역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정성을 더욱 강화한다.
- (3) 편입 이후 그 복무는 엄정히 관리되어야 하며, 특기활동과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위법, 허위, 불성실 등 의무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 병역법 상 경고 및 복무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예외 없이 엄격히 적용한다.
- (4) 위 항과 같이 선발과 편입의 공정성 및 복무 관리의 엄정성이 지켜지는 가운데 2019년 8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계부처(문체부, 국방부, 병무청) TF에서 체육요원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2. 선수 저변 확대와 스포츠과학을 접목한 선수육성체계 선진화 권고

1) 선수등록제도 개편

- (1) 대한체육회는 엘리트선수와 동호인선수를 분리, 등록하도록 한 경기인등록제도를 개선해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스포츠가 연계되도록 회원등록제도로 통합한다.
- (2) 대한체육회는 모든 등록 회원이 각각 참가할 대회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선수 경기이력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대회수준 구분을 위해 대회요강을 정비한다.

2) 생활-엘리트스포츠대회 개편

- (1) 회원종목단체는 생활 및 엘리트스포츠대회의 실질적 연계를 위해 종목별 수준 대회, 종목별 오픈대회 등을 개최한다. 정부는 종목별 수준대회, 종목별 오픈 대회 개최를 확대하는데 예산을 지원한다.
- (2) 대한체육회는 전국체전을 대학부와 일반부로 운영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동호인 선수가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운영을 확대 개편한다.

3)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 개편

- (1)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를 후보-유망주-꿈나무의 3단계 체제로 개편한다. 후보-유망주는 종목 특성, 경기력 수준, 잠재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단계별로 1-3개급을 두고 최고 기량 선수 확보를 위해 차등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 (2) 대한체육회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과 협력하여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 선수에 대한 과학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대표 훈련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천선수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II. 엘리트스포츠 시스템 개선 권고

대한민국의 엘리트스포츠 시스템은 1970년대에 시행되었다. 체육중·고·대학교 등 특수목적 학교 설립, 체육특기자제도 도입, 태릉선수촌 건립,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와 병역특례제도 등이 그것인 바 이로써 안정적인 훈련기반에서 경기력이 향상되어 국제대회의 성과를 거둬 국민적 기쁨과 국가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한편 선수 인권 침해 및 사회화의 단절, 체육단체의 비민주적 운영 및 각종 비리 양산 등의 부정적인 양상도 빚어졌다.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

1. 진천선수촌 개편 권고

진천선수촌은, 예전 태릉선수촌의 역사를 잇는 국가주도 엘리트스포츠시스템의 중요한 공간으로 오랫동안 엘리트스포츠의 산실 역할을 해왔다. 특히 태릉에서 진천으로 이전하면서 국제적인 시설과 장비를 갖추으로써 앞으로도 엘리트스포츠의 중심 거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진천선수촌은 그동안 현저히 부족했던 인권 및 학습권 보장, 효과적인 과학적 지원, 쾌활하고 자율적인 문화 등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에 따른 각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과 제도의 변화 위에 선진적인 시설을 운영하고 지도자와 선수들의 생활 문화를 민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인권적이고 과학적인 기반이 조성될 때 지도자의 헌신은 더욱 고결해질 것이며 모든 엘리트 선수의 꿈 또한 아름답게 실현될 것이다.

스포츠 선진국의 다양한 사례들이나 한국 스포츠의 중장기적 발전 전망의 관점에서 볼 때, 진천선수촌은 현재와 같은 ‘장기합숙형 반복 훈련’ 체계에서 벗어나 전국 각지의 훈련 시설과 전문 인력을 네트워크하는 가운데 각 회원종목 단체 및 지도자와 선수들이 필요시 단기체류하면서 스포츠과학에 기반한 선진적인 기술과 훈련을 도모하는 ‘단기체류형 과학 훈련’ 방식으로 변화되어가야 한다. 장기합숙형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훈련, 생활 통제, 사회적 고립 등에서 벗어나 과학적, 개방적, 자율적 공간으로 진천선수촌이 장기적으로 선진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 관점에서 진천선수촌의 미래지향적인 가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과학적, 인권적, 문화적 관점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럼에도 당장의 현실에서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을 기다릴 수는 없다. 2020도쿄올림픽을 비롯하여 각종 국제대회가 연중 수시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기존 선수촌 구조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 나아가 사건 대응의 측면만이 아니라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지도자와 선수들의 변화된 문화 감수성에 기반하여 그 일상 생활을 개선함으로써, 현재의 상황에서 한걸음이라도 개선되는 것이 눈 앞의 과제인 바, 위원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진천선수촌 인권 보장 강화

빙상 종목 올림픽금메달리스트 심○○ 선수에 대한 조○○ 전 국가대표 코치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은 그 범행 장소가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의 지도자 라커룸은 물론 태릉 및 진천선수촌 빙상장 라커룸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체육계 전반에 걸쳐 폭력, 성폭력의 위험성이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확실한 시스템 개선으로 인권과 그 일상 문화에 대한 제반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대표선수들이 외부와 차단된 채 장기간 머물면서 훈련하는 구조인 진천선수촌에서 인권 상황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조○○ 코치 가해 사건 이후 진천선수촌이 부분적인 시설 보강이나 교육을 하였으나 스포츠인권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그에 의한 훈련과 생활 지침 전반의 개선, 안전하고 안정된 선수촌 문화 수립을 위한 교육과 모니터링 등 지속가능한 제도 수립 등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 등 획일적인 규정 개선

① 일상 문화 개선

2017~2018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대표선수는 1인당 하루 평균 6시간, 연평균 120일 정도를 훈련한다. 훈련은 진천선수촌을 포함해 국내외 훈련으로 이뤄진다. 문체부는 이같은 훈련에 대해 선수 1명 당 연간 240일 내외, 최대 260일까지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장기 합숙형태의 훈련이 지속될 경우 지도자와 선수 관계가 지나치게 명령-복종관계로 고착화되거나, 훈련이외 시간의 자율성이 부족하거나, 지도자가 선수의 훈련외의 일상생활 전반까지 ‘관리’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심할 경우 필수적이고 타당한 ‘관리’를 넘어 지나치게 사적이거나 심지어 정신적인 면까지 ‘통제’하는 구조가 되기 쉽다. 국가가 젊은 선수들을 선발하여 한 장소에 장기간 훈련하고 생활하도록 하는 경우 안전한 시설환경을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일부 꼭 필요한 수준의 ‘관리’가 과도한 ‘통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보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입촌하여 훈련하고 생활하는 것 자체가 사회 관계와의 분리, 단절,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능력이 뛰어난 학생선수들이 여러 훈련 여건, 대회, 수직적 관계 등에 의해 또래 집단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으며, 장차 국가대표가 되어서는 그 분리가 더 고착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훈련 외 시간 동안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회 관계 및 가족 관계가 일상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기본적인 자율성(개인 시간, 면회, 외출, 핸드폰 사용 등)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훈련 외 시간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정해진 현재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매점, 카페,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도 보완하여 지도자와 선수들의 훈련 외 일상 시간의 소박한 즐거움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결코 정신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며 ‘쓸 데 없이 노닥거리는’ 일이 아니다. 한 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시간을 소박하게 활용하는 것이므로, 인권적 차원에서나 선수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나 권장할 일이다.

② 선수촌 운영 지침 개선

선수촌 운영이 지나치게 엄격한 수칙과 과도한 규제 및 징벌적 규범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최소한 훈련 이외의 일상에서는 개방성과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진천선수촌 운영규정이나 훈련관리지침 및 세부 수칙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 각 규정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혼재되어 있다는 점,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무엇보다 거듭되는 여러 인권 침해 등의 문제에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검토하여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훈련관리지침 개정

대표적으로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이하 ‘지침’, 1988년 4월 제정, 2018년 4월 개정)을 살펴보자. 제정 연도가 1988년도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침’은 한 세대 전의 ‘스포츠강국’ 관점에서 제반 요소가 결정된 바 있다. 물론 수 차례의 개정(최종 개정은 2018년)을 통하여 변화된 상황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였지만 기본 골격은 변하지 않았으며, 실제 내용은 경기력 강화를 위한 ‘훈련관리지침’이라기 보다는 선수촌의 장소 운영에 관한 물리적 ‘관리지침’으로 볼 여지가 크다. 이에 시대 상황에 뒤떨어진 조항을 폐기 또는 개선하는 한편, 이 ‘지침’과 ‘선수촌운영 규정’등에 혼재되어 있는 ‘선수촌 운영’ 부분과 ‘경기력 강화’ 부분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경기력 강화’를 위한 내용들은 개별 회원종목 단체가 자율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선수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젊은 지도자와 선수들의 세대 감수성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 인권의 강화

‘국가대표 훈련관리 지침’ 제 1조는 “국가대표 훈련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기력 향상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그 ‘관리’와 ‘향상’에 있어 각종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을 동시에 표현하고 따로 세부 조항에서 이를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각종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명시하게 되면, 이를테면 동 지침 ‘제4조 자격제한’에 있어 각종 범죄 이력, 특히 폭력 및 성폭력을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제8조 지도자의 임무’에 있어서도 총 10가지 임무 중 인권 침해 또는 과도한 임무 부담에 따른 불가피한 인권침해, 즉 ‘합숙생활 지도, 감독’

등을 ‘선수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 임무’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나친 위계서열 문화 개선

스포츠의 훈련과 지도의 특성 상 지도자와 선수의 관계가 온전히 수평적일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대표 훈련관리 지침’ 중 ‘국가대표 선수 임무’의 다음과 같은 표현, 즉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이라는 표현은, 아무리 훈련에 임하는 선수의 기본적인 태도를 강조한 것이라 해도, 강압적이고 통제적이다. 이 규정에 의하여 ‘명령 복종’이 선수가 지켜야 할 ‘임무’가 되는 순간 선수촌 내에 강압적인 훈련 분위기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포함한 제반 강압적 규정 및 그 표현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지도자와 선수는 어떤 의미에서든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다.

동 지침 ‘제15조 교육’에 있어서도 “투철한 국가관과 불굴의 신념을 가지고 훈련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국가가 선수촌이라는 공간에 지도자와 선수를 장기간의 합숙을 전제로 하는 훈련을 실시한다고 하면 그에 필요한 훈련 이외의 제반 교육은 ‘투철한 국가관’만이 아니라 학생으로서 필수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제반 스포츠 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함양함으로써, 일반 학생이나 일반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투철한 국가관’만이 교육의 목적이 되면 각종 세부적인 교육 내용, 훈련 태도, 일상 문화 등이 그 기준에 의해서 편제될 우려가 있으며 자연스러운 애국심이 아니라 이념화되고 강요되는 ‘국위선양’에 의하여 교육권과 문화권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 이에 그 지침의 재검토 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 또한 변화된 국내외 스포츠 상황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

▶ 자율성 강화

동 지침은 지도자와 선수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제16조 외출, 외박’을 보면 선수는 “지도자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이에 지도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수의 개별외출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7조 면회’에 있어서도 “체육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

하고 있는 바, 이 또한 ‘훈련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허락한다’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19조 진료’의 항목에서도 부상, 질환, 치료, 상해 보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나 주로 신체적인 상황을 예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심리 상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심리 상담을 받거나 그에 관한 요인이 있다고 해서 이른바 ‘정신력 해이’로 오해되거나 훈련 또는 선발에 그릇된 판단 요소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그밖에도 입촌 이후 일상 생활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21조 일반수칙’에서도 금지와 제약 보다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와 그 시설과 행위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추가 또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선수촌의 제반 규정에 ‘인권 보장’이 반드시 분명한 의무이자 업무로 표현되고 이로써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국가대표선수촌 운영 규정>(2018년 4월 제정) ‘제4조 임무’를 보면 훈련계획의 수립 등 모두 7가지의 선수촌 임무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지도자와 선수들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임무와 이에 따른 인권 교육 및 필요에 의한 재교육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반 규정에 인권 보장을 선수촌의 ‘임무’로 명시함으로써 이에 필요한 부서, 인력, 공간 등이 제도적으로 설치되고 보완될 수 있다.

(2) 취약한 인권상담 및 조사기능 강화

조○○ 전 코치 사건 이후 진천선수촌은 인권교육, CCTV 추가 설치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인권상담실’도 마련하였다. 그러나 사건 대응적 차원의 교육이나 기계 장비 설치는 그 효과가 단기적이고 제한적이며 오히려 사생활 감시의 역효과도 있다. ‘인권’ 및 그에 관한 여러 업무(교육, 상담, 조사 등)가 지도자와 선수 관계에 과도한 긴장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원인인 것처럼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권상담실의 기능이 대폭 보강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조○○ 코치 사건 이후 전국민적 비판의 분위기와 맞물려 2019년 2월 설치된 이후 2019년 8월 현재까지 인권상담사 1명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선수촌 내에서 인권

상담실의 취약한 위상을 알 수 있다.

2019년 6월 17일, 쇼트트랙 남녀 국가대표팀 선수 전원이 동성 선수 간 성희롱 논란으로 선수촌에서 집단 퇴촌 당한 사건을 보면 진천선수촌의 개선 조치가 여전히 부분적인 효과에 머무르고 있으며,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인권전문가 중심의 협력과 대응이 여전히 부실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의 진행 경과와 선수촌의 조치 결과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① 비시즌 기간에 합숙훈련을 진행한 점

이는 직접적으로 해당 사건과 인과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선수촌이 비시즌 중에도 장기간 합숙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제반 인권 상황의 확실한 개선이 없을 시 언제든지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상태임을 말해준다.

② 가해 선수가 “훈련 도중의 장난기 어린 행동”이라고 가벼이 여긴 점

‘장난’이라는 표현이 가해 선수의 인식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이거니와 곤경을 모면하고자 이 표현을 변명으로 썼다 해도 그 또한 문제가 된다. 지도자와 선수 등 최대 35개 종목 1150명이 생활하는 선수촌에서 이 명백한 성희롱이 ‘장난’ 정도로 인식된다고 하면 향후 선수촌 내의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인권 교육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③ 인권상담사의 독립성이 취약한 점

일반적으로 인권 침해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가 상담사와 면담하는 과정이 반드시 즉각적인 것은 아니므로 이 과정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상담사가 면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연맹(대한빙상경기연맹관리위원회)에 이첩을 한 이후 인권상담사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사실상 종결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현재의 조건에서라도 인권 상담사에게 고유의 상담과 교육 업무만이 아니라 인권 전문가로서 일정한 ‘조사’와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의견

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선수촌이 ‘인권침해’보다는 ‘기강해이’를 보다 중요하게 여긴 점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선수촌이 이 사건에서 ‘인권침해’보다 ‘기강해이’를 우선시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결정이 완료되기도 전에 선수단 전원을 한 달 동안 퇴촌 결정했다는 점이다. 피해 선수의 신분도 즉시 노출되었으며 피해자임에도 집단 퇴촌이라는 징계를 받아야 했다. 피해자도 ‘기강해이’에 따라 일종의 ‘처벌’을 받게 된 셈이며, 인권침해 사건이 기강해이 사건으로 그 사안의 본질이 왜곡된 것이다. 피해자 중심의 사건 조사, 상담, 구제 등의 절차에 앞서 이렇게 집단 징계가 내려지게 되면 향후 선수들은 비슷한 피해를 당하였을 때 ‘인권침해 구제와 신속한 보호’를 요청하기 보다는 ‘기강해이’ 및 그에 따른 팀과 본인에 대한 ‘퇴촌’ 등의 처벌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게 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조○○ 전 코치 사건 이후 진천선수촌이 나름의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고는 하지만 그 인권 보장 수준은 몇몇 시설이나 장치의 보완에 그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최우선적 보호조치 및 인권상담전문가의 지속적이고 책임감 있는 참여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선수촌 내 인권상담실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다. 현재 1명의 인력으로는 최대 1천여 명 이상이 상주하는 선수촌의 여러 인권 업무(일상 사무, 특이 사항, 각종 교육, 훈련 참관, 사건 대응 등)를 물리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나아가, 사건 발생 시 인권상담실이 해당 사건의 상담, 조사, 구제 또는 징계, 교육 등의 전반에 걸쳐 확실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자원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이에 위원회는 1차 권고에 따른 ‘스포츠인권기구’의 설립 이전이라도 선수촌 내 인권상담사 인력을 증원하고, 체계적인 상담과 교육, 훈련 과정 참관과 의견 개선 등을 상시적으로 진행하며, 사건 발생 시 독립성과 책임성 및 이에 필요한 적절한 권한을 갖고 일관되게 사건 및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3) 국가대표 학생선수 학습권 실태조사와 학습지원센터 설립

대체로 국가대표는 20대 전후에 가능하고 그 선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선수 생활을 하다가 국내외에서 실업선수나 프로선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운동선수 중 5%도 되지 않는다. 나머지 95% 이상은 고교 졸업 후 운동과 전혀 관련 없는 직업을 택하게 되고, 대체로 저임금 비정규직 등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전체 선수 생활 기간이나 한 인간의 생애 주기로 볼 때, 국가대표 활동 기간은 매우 짧다.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크고 작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선수 저마다의 조건이나 능력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국가대표 선발 및 입촌이 늘 보장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장기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정한 조건임에도 국가가 선수를 선발하여 진천선수촌에 장기합숙형으로 훈련하고 생활하게 하는 경우, 국가(문체부, 교육부 및 대한체육회)는 마땅히 젊은 선수들이 사회 일반의 생활 조건에 비교하여 모자람이 없도록 다양한 교육과 사회 진출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진천선수촌에서 합숙하고 훈련한 것이 학습 공백과 향후 사회 진출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호주의 경우 운동선수 경력 및 교육(Athlete Career Education, ACE) 프로그램을 통해 엘리트 선수들의 학습권, 인권, 경력관리를 도와주고 있으며, 스포츠와 일, 학업에 대한 통합적 삶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도 올림픽거점센터를 통해 진로 상담이 이루어지며, 선수는 진로상담사와 밀착상담을 통해 본인적성과 능력에 맞는 개인별 경력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선수인권보호 프로그램과 경력·교육·생활방식 기술 등을 지원하는 ‘선수경력과 교육(AC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영국스포츠협회(UK SPORT) 산하 영국스포츠연구원(EIS)에서 선수들이 스포츠 성과와 개인의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Performance Life

style(PL)'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도 국립스포츠연구소(INSEP) 내에 마련된 강의실(20개)에서 학생선수 대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학생선수는 기초 교육으로 1주에 44시간 정규 학교 수업을 진행한다. 교장 추천을 받은 교사들이 INSEP에 직접 방문해 수업을 담당하며, 수업시간 전후로 1:1 수업 코칭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올림픽위원회(JOC)와 일본스포츠진흥센터(JSC)가 협력하여 7개 종목 40여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중학생 선수는 인근 학교의 수업(의무교육)에 참여해야 하고, 고등학교 선수는 학업 성적에 따라 진학 및 통합 수업을 받아야 한다. 국제대회 출전을 할 경우 전담교사를 보내거나 대회 후 학업 진도에 맞게 리포트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현재 진천선수촌에서도 최소한의 학습권 보장과 학력수준 강화를 위한 교육은 실시되고 있다. 중·고등학생 선수는 진천선수촌 인근 지정 위탁교육기관에서 오전 수업(09:00~11:30)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학생 선수들은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들이 진천선수촌을 방문하여 매주 수·토요일에 전공 또는 교양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소속 대학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훈련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선수와 지도자 대상 소양, 스포츠인권, 도핑방지 교육 실시, 학생선수 대상 학업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선수촌 입촌 선수와 코치는, 선발된 후 60일 이내에 연 1회 이상 반도핑 교육과 스포츠인권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반도핑 교육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인권교육은 대한체육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초 소양이나 교양교육은 일회성 특강이거나 저명 인사의 초빙 강연에 그치고 있으며, 그 형태 또한 교육 효과가 낮은 온라인이거나 대규모 집합 교육이다. 무엇보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법들도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국가대표 학생선수의 출석일수, 학사관리 등 학생선수 학

습권 실태를 전면 조사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학습권의 방법 및 진행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결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체 방법 및 그 실효성 등에 대하여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수촌 내 국가대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위 실태조사에 기반, 국가대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선수 학습지원센터’를 진천선수촌 내에 설립해야 한다. 학생선수 학습지원센터는 위탁교육기관, 원소속학교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해야 한다.

한편,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학령에 맞는 일반 교과과정 외에 스포츠 전반에 대한 이해, 해당 스포츠에 대한 이해, 종목별 특성·가치·산업 등에 대한 이해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스포츠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인문적 교육을 실시하고, 특정 종목이 발달한 국가와 도시, 특정 종목이 압도적인 연령이나 성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도 수행하여 장차 해당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스포츠와 국제관계, 스포츠와 어학, 스포츠와 교육, 스포츠와 사회 공동체, 스포츠와 리더십 등을 교육 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이상의 교육 내용은, 향후 그 의미와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행 일반 교육의 프로그램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혁신위의 2차 권고에 따라 학생선수의 교육권 보장 방안이 충실하게 실행되는 경우, 위와 같은 교육 내용이 일선 학교나 체육전문학교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선수촌 이외의 공간에서 국가대표를 꿈꾸는 수많은 학생선수들의 교육적 요구 및 현실적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과선택제 등을 포함한 현행의 다양한 공교육 제도와 연계한다면, 위와 같은 구상은 비단 선수촌 내의 엘리트선수만이 아니라 스포츠로 미래를 꿈꾸는 수많은 학생선수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특성과 미래 가능성에 크게 기여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2) 국가대표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평가 합리화

(1) 처우개선

기본적으로 국가대표 지도자란 그 종목에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공인된 것이며, 그에 부합하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안정적 생활 유지와 자기 종목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① 계약 관계 등의 개선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13조는 ‘국가대표지도자의 신분보장과 안정적인 선수관리를 위해 1년 이상의 임기(계약기간)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회원종목단체는 단체 재정상황 등으로 지도자 선발이 1년 미만으로 이루어지고, 지도자 평가도 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대표 지도자와 관련된 현재의 방식을 좀 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현재와 같은 지도자 선발 및 평가 방식은 최소 1년 이내에 반드시 실적을 내야만 하는 압박으로 작용한다. 특히 국가대표 전임 지도자의 경우 지속적인 지도자 생활에 대한 불안과 그에 따른 기본적인 생계 고민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특히, 현행의 1개월에 15일 이상 훈련 시 수당 지급 조건은 그 자체로 지도자의 불안한 생활 조건을 고착화 시킬 수 있으며, ‘국가대표 감독’이라는 자부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극히 일부에서는 이 수당 조건에 따라 불필요하게 과도한 훈련을 실시하는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다. 이러한 1개월 단위 수당제는 지도자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지도에 방해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대표 지도자가 안정적으로 지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정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그에 합당하는 보수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회원종목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적정 활동기간을 보장하되 경쟁을 기본 원리로 하는 스포츠의 고유한 성격에 따라 기대 성적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합리적이고 다면적인 평가 및 지도자 본인의 적극적 소명 과정을 거쳐 필요시 그 활동 기간을 정리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애초 계약된 기간의 잔여 보수는 지급해야 한다. 단, 지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과도한 업무 조건 개선

국가대표 지도자는 회원종목단체 또는 대한체육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하면서 위 단체들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한국경영자총협회, 2014년 3월 ‘행정해석’ 참조). ‘근로’의 형태, 시간, 장소 등이 특수하다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일반 기준 및 해석의 적용에서 예외가 아니다.

국가대표 지도자라는 자부심 높은 의무의 수행자이지만 동시에 새벽 기상에서 심야 취침에 이르기까지 ‘근로’하는, 즉 주어진 의무에 상응하는 수준의 훈련 지도를 넘어 훈련 외 일상생활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그 업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확장되고 그에 수반하여 무한 책임을 져야하는 현재의 노동 방식과 조건은 개선되어야 한다. 선수의 훈련 외 합숙 생활까지 지도자가 관리 의무를 지는 것은 사실상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할 우려가 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이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훈련 외 일상생활, 특히 선수의 숙소 생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은 생활지도사 등 전문 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지도자의 안정된 일상 환경 보장

국가대표 지도자의 경우 선수선발 과정, 경기력 저하와 성적 압박, 선수와의 신뢰 형성 부진, 개별 선수의 부상 및 슬럼프 관리, 개별 선수의 동기 부여 및 팀 응집력 향상, 외부의 압력이나 동료들과의 관계, 훈련 시 감정 조절 또는 과도한 감정 표출, 선진적인 코칭에 대한 의욕과 그에 미비한 제반 상황, 은퇴 후 진로 및 사회적 고립감 등 다양한 측면의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

‘국가대표 지도자’라는 자부심만으로 신체적 탈진, 과도한 감정 소모, 다양한 심리적 압박을 견뎌내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이에 지도자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지도자의 심리적 안정, 직업 만족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지도자의 사회적 관계나 가족 관계 등 그 일상이 건강하게 유지될 때 그의 지도를 받는 선수들 또한 사회적 고립 없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훈련과 일상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지도자와 선수 모두에게 훈련 이외의 일상 시간까지도 훈련의 연장으로 인식되어 정해진 훈련 이외의 일상 시간이나 주말까지도 과도한 긴장과 필요 이상의 통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도자는 선수 훈련 이외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고 훈련 외 선수들의 일상 생활은 전문적인 생활 지도사의 지원과 보호를 받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로써 선수층의 일상 문화가 개선되어 자율적이고 활기차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검토하건대, 우선적으로 국가대표 지도자가 안정적으로 지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연봉제 도입 등 보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는 판단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회원종목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대표팀 지도자 경력에 일반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지역 사회에서 존중받는 위치로 격상시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지도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종목 전문 교육 및 스포츠 전반의 역사, 문화, 산업 등)과 효과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은퇴 후 사회 생활을 하는데 있어 모자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평가 기준 개선

지도자에 대한 평가를 기존 경기실적 중심에서 장기적 비전, 과학적 훈련, 인권 감수성, 학습권 보장, 선수 만족도 등 종합적 평가지표로 전환해야 한다. 지도자 평가방식도 상급자평가, 지도자간 평가, 선수평가 등 다면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방식은 지도자 선임 및 연임 계약에 있어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종목단체로부터 일방적 평가를 받게 되는 바,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들의 성적 지상주의는 구조적으로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와 선수의 선발을 주관하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구성 또한 다양화하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경기력향상위원회는, 현행의 위원회 구성 조건에 더하여 다양한 전문가(스포츠의과학, 심리, 교육, 인권 전문가 등)들이 참여하여 객관적 데이터와 전문

적인 견해를 충분히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감독은 그와 같이 전문적 견해를 충분히 청취하고 그에 기초하여 선수의 선발, 훈련, 출전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3) 전문성 제고

국가대표 지도자들이 최고 수준의 스포츠지도자로 그 능력과 자질이 유지되고 함양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국가대표 지도자의 계약과 연봉 조건을 현행에 비춰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것이 되도록 개선하고, 그 일상 업무 또한 분명하게 확정하여 선수와 팀의 경기력 및 생활 전반에까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현행을 개선해야 한다. 이 때 ‘국가대표’ 지도자는 그 위상에 걸맞게 스스로 자기 종목의 세계적 흐름, 새로운 전술, 과학적 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해 적극적인 연구와 시도를 하게 될 우호적 환경에 놓일 것이다. 대한체육회와 각 회원종목단체는 무엇보다 이와 같은 안정적 고용조건을 보장함으로써 지도자가 ‘국가대표’의 위상과 의무에 걸맞게 체계적인 연구와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 스포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 과정에서 스포츠 인프라의 구축뿐만 아니라 스포츠산업 전반에 걸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비하여 국가대표 지도자에게 스포츠의 가치와 역사, 문화 등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 및 자기 전문 종목에 대한 심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원 교육비 지원 등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교육이 일회성 이벤트나 단순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재교육’의 과정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한축구협회의 경우 엄격한 과정을 거쳐 지도자 자격을 부여받은 지도자에게 그 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의무 점수를 이수하지 못한 지도자는 지도자 자격증이 정지되며 정지된 지도자 자격은 잔여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협회의 재심사 과정을 통과하여야만 재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이미 다양한 평가와

엄격한 절차를 거쳐 ‘국가대표 지도자’로 활동하게 된 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강도 높은 의무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자기 종목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은퇴 이후 ‘국가대표 지도자 출신’답게 일반 사회에서 존중받으며 활동할 수 있게 하려면, 현재와 같은 단순 소양이나 정보 제공을 넘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지도자 역시 ‘국가대표 지도자’가 평생의 지속적인 직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선 현장 지도자 복귀 이후의 안정적인 생활과 전문성의 유지를 위하여 진천선수촌의 지도자 교육 여건은 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코칭 전문성 제고, 종목 국제동향 분석, 스포츠과학자와의 협력 확대 등을 위해 일정 이상 체계적인 교육 및 연수 등이 필요하다.

3) 진천선수촌 스포츠과학지원시스템 강화

현대 스포츠의 급변과 과학적 시스템에 기반한 경기력 향상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지도자의 과학적인 지도 방식 지원이나 선수 개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적 조건에 맞게 의·과학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이 기능의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수행은 외부기관인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선수촌 운영 조직과 경기력 제고를 위한 스포츠과학 연구 및 지원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고, 스포츠의학은 외부 민간병원과 협력 운영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물리치료 중심의 의무 인력과 영상분석 수준에서 지원하며, 인근 민간병원과 연계하여 의료 지원하고 있다. 의무 인력 21명(의사 3명, 물리치료사 12명 등)과 과학 인력 2명(영상분석 및 종목별 DB 관리) 배치되어 있다. 여기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스포츠과학 밀착지원팀’ 운영을 통해 지원하는 체제이지만 보강해야 할 점이 상당하다.

기본적으로 연구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 현재는 연구원 인력 대비 지원 종목이 많아서 메달 획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점종목, 정책종목, 일반종목, 기본종목으

로 구분해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 또한 세분하여 보면 1명의 연구원이 3~4종목을 지원하는 등 연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스포츠과학 지원체계 안정화를 위해 선수촌 내에 상주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그 인력 또한 20명 정도이고 그 인력이 연구 및 데이터 기반 체력, 기술/영상, 심리, 특수체육(심리, 훈련, 영상 지원 등) 등 거의 전 분야를 지원하고 있어 전문 인력의 보강 및 상시 밀착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한편 스포츠의학적 지원은 선수촌내 메디컬센터를 두고 민간 전문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사후 지원이나 재활에 집중되어 있어 전문적이고 선제적인 스포츠의학 관련 연구 기반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스포츠청 산하 일본스포츠진흥센터(JSC) 내 하이퍼포먼스스포츠센터(HPSC)에 편제된 일본스포츠과학연구소(JISS)가 국가대표선수촌을 함께 운영·지원하고 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의·과학 연구 및 지원 조직이 국가대표 선수촌과 동일 조직 내에 편제되어 그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프랑스 역시 체육부 산하 국립스포츠연구소(INSEP)가 국가대표선수촌을 운영하는 바, 스포츠의·과학 연구 및 지원부서가 함께 편제되어 있다. 호주와 미국 등 ‘스포츠선진국’에서도 엘리트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의·과학 연구 및 지원 조직이 함께 편제되어 있다.

요컨대, 세계 각국은 스포츠의·과학을 통합 지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천선수촌은 선행적이고 적극적인 경기력 향상보다는 의료 지원 대응이나 재활 치료에 그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이에 연구 지원 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종목 특성과 메달 가능성을 고려해 종목군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스포츠의·과학을 지원해야 하며, 스포츠의·과학 연구가 훈련에 바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통합 편제와 역할 강화만이 아니라 각 전문적 의견의 실질적인 작동 여부다. 스포츠의·과학 전문가들의 지원과 개별 선수의 신체 및 여타의 여건에 대한 판단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지도와 훈련의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되어야 한다. 지도자 개인의 고유한 지도 철학이나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의·과학 전문가, 심리상담 전문가, 인권 전문가, 생활 관리 전문가 등

의 판단을 두루 청취하여 선수의 훈련이나 생활에 중요한 결정을 함으로써 지도자의 고유한 지도 방침이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위원회는 한국 스포츠의 과학적 발전을 위하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전문 인력이 진천선수촌에서 밀착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문체부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 전문 인력 및 예산을 보강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국가대표 선수를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강화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목별 훈련과학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개인 특성 맞춤형의 정기적인 과학적 지원을 하며 국가대표 감독진은 선수 선발 및 훈련 계획 수립 시 객관적인 데이터와 스포츠의·과학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2.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 개편

1)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 현황

1975년부터 시작된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는 지급대상자가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입상한 선수로서 평가점수 20점 이상인 자로 하며 올림픽 금메달 90점, 은메달 70점, 동메달 40점, 세계선수권대회 4년 주기 45점부터 1년 주기 20점, 아시아경기대회 등 1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 지급방식은 연금형식인 월정금, 일시장려금, 일시금, 특별장려금 4가지 형태로 되어 있고 월정금이 가장 선호되며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연금대상자는 1,424명이며 120억원이 지급되고 있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대상자는 메달획득으로 평가점수 20점이 넘는 그 다음 달부터 사망한 달까지 지급된다. 이러한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과거 국제대회에서 메달의 획득이 국가 위상 제고, 경제성장 및 도약의 상징 효과 등으로 인식되던 시기에 만들어진 제도로 2019년 현재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스포츠 안팎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 다수의 스포츠인 보다는 최고 성적의 소수자에게 지원

된다는 점, 공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선수를 격려하는 국민의 인식 변화, 정부의 별도 포상금 지급과의 중복지급 등이 지적되어 왔다.

스포츠선진국의 경우 연금 형태는 전무하고 전부 포상금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다. 미국은 한화 약 2,700만원, 독일은 약 2,200만원, 호주는 약 1,800만원, 일본은 약 3,000만원, 중국은 약 8,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영국은 메달획득에 대한 포상금은 없고 선수시절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력향상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영국의 경기력향상보조금은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경우 연간 4,000만원, 올림픽 8위 이내 3,000만원, 세계대회 성적 우수자 2,000만원 정도이다.

현재 한국은 메달획득에 대한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한 경기 성적에 대한 포상금도 따로 지급(리우올림픽의 경우 금메달 6,300만원, 은메달 3,500만원, 동메달 2,500만원)하고 있으며, 각 경기단체나 기업 등에서도 후원금 형식으로 상당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메달 획득에 따른 포상금 이외에도 국가대표선수일 경우 1일 훈련수당 60,000원도 지급하고 있다. 결국 한국은 연금도 있고 별도 포상금도 있으며 훈련보조금도 있는 반면, 선진국의 경우 연금 형식은 없고 모두 포상금 형식이며 일부 국가는 포상금도 없이 대표선수시절 경기력향상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실제 연금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연금은 장기재직에 대한 보상, 퇴직 후의 장기소득보장, 또는 국민 개개인의 노령, 질병, 사망 등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생활보장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국제대회입상자의 평가점수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적용대상의 측면에서 봐도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개별지역연금의 경우 해당 종사자 모두가 적용대상이 되나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지급대상자는 국제대회에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한 평가수치 20점 이상인 자로 국한되고 있다. 급여시기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노령, 장애, 사망시에 지급되며, 개별지역연금은 가입자의 퇴직, 장애, 사망시에 지급되나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대상자는 연령 개념이 없고 국제대회 입상으로 평가점수가 20점 이상에 도달하기만 하면 지급되고 있다. 급여수준도 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각출금의 정도에 비례하나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대상자는 각출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이상 살폈듯이,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국제 대회 포상금을 평생 지급한다는 단순 사실에 의하여 ‘연금’이라는 표현을 쓸 뿐, 재정과 복지에서 말하는 ‘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2)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개선 방안 및 체육인 복지 강화 방안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올림픽 등 국제대회 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포상금 성격이고 메달획득 다음 달 시점 수령, 연금 수령자의 자기 부담금 등이 없는 등 연금 성격도 아니므로 그 실제 성격에 맞게 포상금,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 다만 국제대회 메달획득으로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받기를 원해서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상당수의 예비 및 잠재 메달리스트들의 사기저하 및 훈련 위축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이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① 지급 방식의 변화

이에 위원회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일시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올림픽 개최주기 등을 고려하여 2028로스앤젤리스 올림픽 이후인 2029년 이후부터 시행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 단, 기존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혜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현행의 방식대로 연금이 지급되도록 한다.

신규연금지급 대상자는 2020도쿄올림픽이 끝난 후인 2021년부터 2028로스앤젤리스 올림픽 이후인 2028년까지 연차적으로 연금지급율을 낮추고 일시금지급율을 높여 나가도록 한다. 이후 2029년 신규연금지급 대상자부터는 100%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신규연금지급 대상자가 2021년 대상자일 경우 연금지급율 90%, 일시금지급율 10%, 2022년 대상자일 경우 연금지급율 80%, 일시금지급율 20% 등으로 2028년까지 연금지급율 10%, 일시금지급율 90% 형태로 추진한다.

단 일시금 금액 산정, 그것의 산정을 위한 연금 기간 계산, 연금과 일시금의 연차

적인 비율 조정 등은 관계부처 및 연금 전문가, 생활설계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체육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② 보편적 복지제도 강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현행 체육인복지운영규정은 올림픽 등 국제대회 메달리스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록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지는 못하였지만 함께 훈련하고 참가하여 세계무대에서 경쟁한 선수들, 해당 종목의 세계적 수준 격차 등에 따라 상당한 성적을 냈음에도 연금 수혜나 체육요원제도 편입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선수들, 국가대표는 아니지만 아마추어선수로 활동한 보다 많은 선수들 등을 위한 안정적 복지제도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 모든 선수들이 운동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고 은퇴 후에도 생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보다 확장된 보편적 복지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체육인복지운영규정에는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로서 상해를 당했거나 장기 입원할 때 지원하는 선수·지도자보호지원금, 경기력향상연구연금 평가점수 40점 이상이면서 은퇴 후 유학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국외유학비, 국가대표로서 받을 수 있는 생활보조비 및 대학원진학장학금, 단기교육훈련비 등이 있다.

국가대표를 제외한 체육인복지서비스는 초중고 학생선수 대상 체육장학금, 은퇴 전후 현역 운동선수 및 은퇴선수 대상의 취업지원서비스 정도에 불과하다. 현재 시행 중인 경력 전환 지원, 생활 안정 자금 지원,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체육인 전체를 포괄하는 복지제도로 확대 강화해야 한다.

3. 체육요원제도 운영 강화

1) 체육요원제도 변천 과정의 검토

대한민국 <헌법> 제39조는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동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1970년대에 잉여병력자원(연간 20만여 명)의 해소와 고도화되는 산업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산업 육성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3년에 병역특례제도가 만들어졌다. 1973년 당시 비상국무회의는 ‘병역 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과학·기술 분야와 함께 ‘학술·예술 또는 체능의 특기를 가진 자’에 대해 보충역으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체육의 경우 ‘체능의 특기를 가진 자’라는 모호한 기준에 따라 1970년대에는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양정모만이 유일한 특례 대상자가 되었다. 1978년 방콕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수상하고 이미 독일 분데스리가로 진출했던 차범근도 귀국하여 공군 입대로 복무하였다.

이에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수혜의 범위를 넓힌 것은 1981년 11월 7일 <병역특례규제법 시행령>(제10623호)의 개정 이후다. 이는 당시 권위주의 정부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 개최를 필두로 한 국가주의 스포츠정책을 전면 실시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위 두 대회뿐만 아니라 각 종목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 아시아선수권 대회 등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1984년에는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인 기록경기 종목에서 아시아 기록을 수립한 자와 한국체육대학교 당해 졸업자 중 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자도 해당되도록 하였다.

체육요원제도는 스포츠를 권위적 국가주의 정책의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하던 군사정권 시절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제도는 선수 개인에게 개인적 열망을 실현하는 기회가 되었지만 국가 정책이라는 총괄적 차원에서 보면 서울올림픽을 매개로 펼쳐진 국가주의 스포츠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올림픽 이후 병력자원 부족, 형평성 논란 등을 감안하여 1990년 4월, 올림픽대회 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로 그 범위를 제한한 데서 확인된다.

2) 대체복무제도의 입법 취지와 체육요원제도의 엄격한 적용

운동선수에 대한 이른바 ‘병역특례’는 대체복무제도 안에 속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 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산업 육성이나 기타 공익 목적을 위해 근무하도록 하고 이로써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의무소방,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 등이 이에 포함된다. 1993년에 전면 개정된 병역법에 의하여 ‘예술·체육요원’은 제5조 제1항 제3조의 보충역으로 분류된 바 있으며, 2007년 국군 병력 규모 및 병역 복무기간 감축과 함께 공평한 병역 부과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회복무제도에 의해 현재 체육요원제도는 대체복무제도에 속해 있다. 그 자격 기준은 병역법 시행령 제68조 11항에 ‘올림픽대회 3위 이상’과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선수에 대한 이른바 병역특례는 최초의 입법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표현되지 않았고, 이후 국가주의 스포츠정책 및 스포츠에 내재된 민족주의적 열망에 따른 사안별 사회 분위기에 따라 그 기준과 범위가 자의적으로 변경, 적용되어왔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체육요원제도는 ‘병역특례’가 아니며 그 선발의 공정성과 운영의 엄정성이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비판적으로 쓰이는 ‘병역특혜’는 더욱이 아니다. 체육요원제도는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제도’로 그 법적 요건을 갖고 있으며, 여기서 핵심은 대체복무제도의 입법 취지에 맞게 체육요원제도가 엄격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1) 변화된 사회 상황과 입법 취지의 유지

개발도상국 단계에서 다른 사회 가치를 압도했던 ‘국위선양’의 가치가 여러 산업, 문화, 예술의 다양한 발달에 따라 변화하였다. 스포츠만이 유일하게 ‘국민통합’이나 ‘국위선양’의 상징이 되던 상황과 비교해 지금은 현저히 달라지고 있다.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나타내어 나라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은 소중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이르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 수준 그리고 문화적

활력에 힘입어 이른바 ‘국위선양’에 대한 가치 및 그 가치의 실현 내용이 다양하게 변화하였으므로 특정 대회 성적에 대한 사회적 열기를 특별하게 반영하는 등의 예외 없이 ‘올림픽 동메달 이상 및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법적 기준을 엄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1993년 12월 31일 병역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체육요원 제도는 병역법에서 정하는 ‘공익근무요원’의 한 분야로 편입되었고 ‘올림픽 동메달 이상 및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객관적 기준도 마련되었다. 이렇게 법률 요건으로 정한 기준을 엄격히 유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2002년 한일월드컵 16강 진출에 따라 2002년 6월 25일 월드컵 16강 진출자도 특별 편입 대상이 되었으며, 2006년 9월 22일 이후에는 월드컵베이스볼클래식(WBC) 대회 4위 이상 입상자도 이른바 ‘국민 여론’에 의하여 특별히 추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비인기 종목이나 최상위 바로 아래 단계의 성적 성취자에 대한 제도적 허점도 있다. 예컨대 야구 종목의 경우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 당시 선발 인원 22명 전원을 병역 미필자로 구성한 바 있으며, 그 이후 야구 종목에서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까지 무려 89명의 선수가 특례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여론’에 따른 ‘특별한 결정’이나 그 선발 과정의 자의성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국위선양’이라는 기준이 특정한 대회의 계기적 성취에 따른 이른바 ‘여론’에 의하여 변칙적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현재와 같이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게임 1위 입상자’로 그 기준을 엄격히 유지함으로써 체육요원제도가 대체복무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2) 오인과 오해의 차단

체육요원제도의 특례 범위와 그에 따른 실제 수혜자의 가능성 및 숫자는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마치 대다수의 선수들에게 대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제도인 듯 오인되고 많은 엘리트 선수들이 해당되는 것처럼 오해되는 폐해가 있다. 2015년의 기준으로 보건대, 1973년 병역특례제도 제도 도입 이후 42년이 흐르는 동안 911명

의 선수가 병역특례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2005년에서 2015년으로 한정해 봐도 체육요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연평균 18.6명이며, 이는 고등학교 이상의 전문 선수 등록 인원 중 0.2%에 불과하다. 2018년 이후의 현황만 살펴봐도, 대체복무 이행자가 산업기능요원, 공익법무관 등 연간 30,914명(18. 10월 기준)인 가운데 체육 분야는 30~40명(2019년 8월 현재 38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실제 수혜 가능성 및 그 숫자가 극도로 제한적임에도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집중되는 전국민적 관심과 그에 따른 여론의 여파로 마치 많은 선수들이 그 대상자가 되는 듯 오인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그 종목의 대중성이나 그 대상자의 스타성에 의해 상당수 선수들이 수혜를 받는 것처럼 ‘과잉대표’되는 폐해가 적지 않다. 특히 이러한 오인과 오해에 기반하여 스포츠정책이 수립되고, 그에 기반하여 훈련 목표가 설정되거나 과도한 훈련의 동기 부여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3) 공정한 선수선발

현재의 병역법과 대체복무제도에 따른 체육요원제도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발의 공정성과 관리의 엄정성이다. 실제로 체육요원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은 제도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공정한 선발 과정과 엄정한 관리에 대한 촉구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이 사안에 대하여 선명히 대립되는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한 바 있다. 이 대회에 손○○ 선수와 오○○ 선수의 경우가 그것이다. 두 선수 모두 체육요원제도의 편입 기준과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그러나 손○○ 선수의 경우 유럽리그 및 2018러시아월드컵에서의 활약으로 인하여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제기된 바 있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 체육요원 편입에 대해 아무런 비판이 없었다. 반면 오○○ 선수의 경우 경찰청 입단 거부, 상무 지원 입대 포기, 아시안게임 선발 출전, 금메달 획득 후 체육요원 편입 등의 과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는 대체복무제도에 따른 체육요원제도의 유지에 공감하면서도 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단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다.

대체복무제도 자체의 입법 취지가 소멸되어 폐지되는 등 뚜렷한 법률적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그 입법 취지 안에 규정된 체육요원제도 자체가 법률상 문제 요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선발과 운영에 있어 대체복무제도에 부합하는 공정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올림픽,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선발의 경우에 관하여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대표 선수 선발과 관련된 위원회는 그 논의와 결정 과정에서 병역 관계를 신중히 검토하여 공정하게 선발해야 한다.

(4) 엄정한 복무관리

대체복무제도 운영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현역 복무와의 ‘등가성’이다. 일반적으로 현역 복무가 사회와 격리된 영내 생활, 기본권의 부분적 제한, 기존 업무 또는 학업과의 일시적 단절, 기회비용 상실 등이 발생한다. 현행 병역법 상 현역 내에서 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 및 보충역 내에서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는 복무 강도, 복무 기간, 복무 형태 등에 있어 일정한 ‘복무 등가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대회 성적에 따른 사후 보상적 차원의 체육요원제도는 이 등가성이 취약하다. 체육요원제도의 경우 병역법 개정에 따른 봉사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엄정히 운영함으로써 사회 공익적 성격을 보완하여 최소한의 등가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현행 법률 상의 용어인 ‘봉사 활동’을 ‘의무 활동’, ‘복무 활동’ 등으로 변경하여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이후의 활동이 다소간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봉사’가 아니라 명백한 ‘병역 의무’임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2015년 7월 1일부터 복무기간 중 특기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하도록 병역법이 개정되었다. 스포츠선수의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 지도·교육 활동, 그 밖에 공연, 강습, 교육 및 공익캠페인 등을 내용으로 하며, 의무복무기간 중 총 544시간을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의무복무기간까지 봉사활동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모두 마칠 때까지 복무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국가대표 훈련일수 및 대회참가 일수, 프로종목 시즌 일정, 해외 진출 등을 감안해야 하지만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루 평균 8시간으로 하면 총 복무기간 34개월 중 68일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대체복무에 따른 일반 사회복무요원의 24개월 동안 매일 8시간이라는 사회 공익 복무와 비교하여 증가성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복무 조건을 강화할 필요는 없지만, 그 복무 관리를 엄정히 함으로써 최소한의 증가성은 충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봉사활동 확인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장○○ 선수와 같은 사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특히, 여타의 대체복무제도에 비하여 사후 보상적 성격이 강한 체육요원제도는 그 제도의 엄정함이 더욱 요구된다. 여러 사회적 정서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이른바 ‘국위선양’이라는 가치 기준의 변동성, 사안별 계기별 성적 성취도 등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하는 여론의 유동성을 감안할 때 체육요원제도는 개별 선수들의 병역에 대한 엄중한 태도, 선발의 공정성, 편입 이후의 성실한 봉사, 음주운전 등 일반 사회 규범 준수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3) 현재 시점의 위원회 판단

정부는 2023년 이후 병력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2019년 군 대체복무 중 하나인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을 2018년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인 바 있다. 또, 의무경찰 등 모든 전환복무는 2021년까지 단계적 감축을 거쳐 2022년부터 배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산업기능요원, 의무경찰 등 전환 대체복무 정원을 대폭 줄여나가면

서 단계적으로 현역병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의무경찰·의무소방·해양경찰 등 군의 전환복무는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2017년 1만4806명, 2018년 9624명이었던 의경 배정인원은 2019년 8328명으로 줄었다. 기존 인원이 복무를 마치는 2023년이 오면 전환복무는 완전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가 전환·대체복무 배정인원을 대폭 줄이는 이유는 병력 자원이 부족해지는 현상 때문이다. 여기에 복무기간 단축까지 겹치면서 2023년 이후엔 병력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이런 조건에 따라 선수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서 훈련 및 경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국군체육부대, 경찰체육단도 축소 운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2018년 의경 감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23년 의경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을 추진 중이고 이에 따라 경찰체육단을 통해 군 복무를 이행하는 제도 또한 대폭 축소 내지는 폐지되고 있다.

이상의 법률적, 군사적 이유에 의하더라도 선수라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직업적 특성 상 활동기간이 짧고 신체 능력의 전성기는 20대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한정된다. 또한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에 따른 국가 기여도가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제도의 입법 취지 아래 체육요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그 선발과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엄정성을 강화한다는 전제에 근거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위원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계부처(국방부, 문체부 등)의 TF에서 체육요원의 선발과 편입의 공정성 및 복무 관리의 엄정성 확보라는 전제 아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을 권고한다.

Ⅲ. 선수저변 확대와 스포츠과학을 접목한 선수육성체계 선진화 권고

1. 엘리트 선수육성체계 선진화의 필요성

한국의 엘리트 선수훈련체계는 장시간 훈련, 상시적 합숙에 의한 훈련, 훈련을 위한 훈련, 시합을 중시하는 훈련, 지도자 경험에 의한 훈련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선수육성체계는 ① 특정선수 대상의 반복 훈련체계, ② 학제에 의한 육성체계, ③ 다른 가능성이 차단된 육성체계, ④ 비체계적인 훈련으로 구분해 논할 수 있다.

① 한계에 도달한 특정선수 대상의 반복 훈련체계

한국의 학교운동부, 실업팀들은 과거 새벽, 오전, 오후, 저녁 등 하루 4번 훈련을 한 경험들이 있으며, 여전히 새벽훈련을 하고 있는 학교나 실업팀이 있고 오후 수업시간 일부를 잠식하면서 오후 훈련을 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선진국은 1일 2시간 훈련, 3시간 훈련 식으로 필요한 양만큼 훈련을 하며, 어린 연령일수록 성장발달 단계를 고려한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 훈련시간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는데 이유는 훈련량이 승패를 결정한다는 신화가 존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도자가 선수를 ‘지도’나 ‘관리’ 또는 심지어 ‘통제’의 대상으로 보아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시공간 범위 내에 있도록 하는 오랜 관습 때문이다.

비교적 고연령대의 지도자들에게 이는 자연스러운 ‘관습’으로 보일 수 있으나 각종목에서 엘리트로 성장하여 국가대표 또는 프로 선수 과정을 마치고 해외 활동 및 연수 등 국내외에 걸쳐 다양하고 선진적인 코칭 경험을 한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장시간 반복 훈련’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음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밝히고 있다.

이렇게 장기합숙형 구조에서 동일 훈련의 반복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기본기술 습득, 기술 수정·보완은 최소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한데, 한국적 현실에서는 기본기술 습득이나 기술 수정·보완을 할 시간도 없이 시합에 출전한다. 이것은 잘못된 폼이나 기술이 시합상황에서 더욱 고착화되는 현상을 낳는다.

이러한 훈련과 시합의 조건에 의하여 ‘특정선수 대상의 반복 훈련체계’로서 선수 육성체계가 고착화 되었다. 전국민, 전 연령층을 선수 인구로 갖고 있지 않고 특정 등록선수만을 선수로 인식하고 훈련시키는 체계가 그것이다. 한국에서 선수는 ‘엘리트선수’를 의미하며 엘리트선수는 진입하기는 쉽지만 빠져나가기는 어렵다. 일단 진입하게 되면 훈련에 올인해야 하고 학습권이 침해되면서 다시 일반 학생으로 돌아오기 어렵다.

② 학제에 의한 육성체계

‘학제에 의한 육성체계’는 한국의 교육체계와 연관이 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 이어지는 6:3:3 학제는 학생선수의 대회참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초등학교는 4-6학년만 운동부가 존재하고 중·고등학교는 상급학생들 위주로 대회에 출전한다. 학제별 저학년은 대회출전 기회가 제한되고 상급학교 진학 등에 필요한 경기력 제고를 위해 상급학생 위주로 훈련노력을 집중하게 되어 저학년의 훈련효과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스포츠클럽제는 학제에 의한 육성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체제이며, 연령별 대회개최 방식도 도입할 만하다. 또한 자기 수준에 맞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대회요강이 필요한데, 현재는 등록선수일 경우 그 경기력에 관계없이 등록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만 참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매우 크며 따라가지 못하면 운동을 그만둘 여지도 크다.

③ 다른 가능성이 차단된 육성체계

한국적 현실에서 체육특기자로 명명되는 엘리트선수들은 대학에 경기실적으로만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고3 때까지 운동을 그만두기 어렵다. 국가가 엘리트선수들이 고3 때까지 운동을 그만두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모든 학생선수가 국가대표가 되거나 프로로 진출하는 것은 아닌 만

큼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진로를 제안해 주는 것은 국가와 교육당국, 그리고 체육 단체의 의무이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이 차단되어 운동에만 ‘올인’했던 선수들은 부상, 진로 전환 혹은 은퇴 이후 갈 곳을 잃고 있다.

④ 비체계적인 훈련

‘비체계적인 훈련’이란 모든 엘리트선수들이 단일한 수준체계에서 경쟁한다는 의미이다. 초중고 대회도 단일 수준 대회이며 실업팀 대회들도 단일 수준대회이다. 현재 엘리트운동부들은 수준을 나누는 것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렵다고 한다. 예를 들어 고교운동부가 나누어진 수준에서 2부 수준이라면 어떻게 대학진학이 가능하겠는가? 2부 고교운동부를 두고 있는 학교가 운동부를 계속 키우겠는가 라고 말한다. 모두가 1부 운동부여야 하기 때문에 신규 창단 팀이라도 우승, 상위입상이 목표가 되고 그 날부터 운동에만 전념한다.

일본의 경우 초중고 운동부는 수준별 대회로 진행되며 미국의 운동부도 수준별로 진행된다. 유럽의 클럽제 대회들은 축구처럼 1부부터 10부 이상처럼 근본적으로 수준별로 진행된다. 수준별 대회 운영이란 같은 수준의 팀이나 선수끼리 경쟁하고 수준이 높아지면 상위 수준에서 경기하는 시스템으로 선수저변확대, 선수목표 설정, 발전하는 기량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국가관리 선수육성체계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상 살핀 바와 같이 향후 선수훈련체계는 연령별·수준별 표준화 된 훈련량에 의한 효율적 훈련, 집체·합숙에서 벗어난 개인 맞춤형·합동훈련, 목표지향 및 실전형 훈련, 기본에 충실한 훈련 및 훈련평가를 위한 시합참가, 스포츠과학에 기반 한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선수육성체계는 선수저변 확장을 통한 선수육성체계, 연령 별에 따른 대회시스템 구축, 수준별 경기시스템 마련, 다른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선수육성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2. 선수육성체계 선진화 방안

1) 선수등록제도 선진화

(1) 선수등록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4항에 따르면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이를 일명 엘리트선수라고 부르며 경기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선수는 엘리트선수가 아니라고 이해된다. 1970년대 엘리트선수를 육성해서 국가위상제고, 국위선양을 필요로 했던 대한체육회는 특정선수를 등록하게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훈련과 지원을 특화해 왔다. 2019년 지금도 경기단체에 등록한 선수는 특별한 대상,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 경기단체에 등록한 학생선수는 체육특기자제도에 의해 운동만으로 대학을 입학할 수 있으며, 실업선수는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에서 급여와 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 경기단체에 등록한 선수여야 소년체전 또는 전국체전에 출전하고, 국가대표후보-국가대표가 되며, 경기력향상연구연금과 체육요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간이 된다.

반면 1988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오늘날까지 국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생활체육동호인이 생기며 각종 생활체육대회가 활성화되었지만 이들은 경기단체 등록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단체 등록선수가 출전하는 대회는 출전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경기단체 등록선수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도 포함될 수 없다.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으로 경기단체도 생활체육인의 등록을 허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선수등록과 동호인등록으로 이분화하고 있다. 여기서 선수등록은 여전히 체육특기자제도의 대상이 되고 소년체전 또는 전국체전에 출전하며 체육인복지규정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등록동호인은 여가로 엘리트대회와는 다른 생활체육대회에만 참가할 수 있다. 이렇게 선수 등록 자체가 철저히 분리되고 이원화되어 있는 바, 저출산으로 유·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몇몇 인기종목을 제외한 비인기종목들은 엘리트선수의 수도 감소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2) 선수등록제도의 개편방안

향후 선수등록은 전문선수, 동호인선수로 이분화하여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모두 회원등록을 하고, 대회에 출전하고자 할 경우에만 선수등록을 하는 방법이 적절하다. 이러한 선수등록제도의 개편은 등록선수의 확대, 종목회원단체의 엘리트대회와 생활체육대회 연계 및 통합에도 매우 중요하다. 2019년 현재까지 경기인 등록제도가 선수등록과 동호인등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로 등록한 선수들은 엘리트대회에 출전하고 동호인으로 등록한 선수들은 생활체육대회에 각각 출전하게 되는데 상호간의 호환은 금지되어 있다.

현재 시점에서 종목별로 엘리트대회와 생활체육대회의 경기력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진정한 선수등록제도 개편의 의미, 대회연계 또는 통합취지가 달성되거나와 일단 그 단초는 선수등록제도의 회원등록제도로의 개편이며 다음으로 출전이 허용되는 다양한 수준의 대회개최가 필요하다.

아울러 선수경기이력시스템 도입을 통해 자기 수준에 맞는 출전대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수경기이력시스템은 자신의 경기수준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전문선수이건 동호인선수이건 그 선수의 경기력을 누적하여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를 알 수 있게 해준다. 향후 기존 및 신설 대회는 대회요강 정비를 통해 선수의 출전자격 수준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 테니스 종목으로 예를 들자면, 현재의 엘리트선수, 일반학생선수의 경기력 차이를 고려할 때 연령별 엘리트대회에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3위팀 이내 참가 허용 등 대회요강을 제시하면 경기력 수준이 비슷하여 경쟁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성인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국내 테니스동호인 랭킹 10위권 선수는 성인 엘리트대회(물론 선수·동호인이 함께 참가할 수 있는 특정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면 충분하다. 물론 이런 대회는 랭킹포인트 제도¹⁾를 선수·동호회로 오픈하고 랭킹포인트 일정범위 내의 선수가 참가하는 대회로 추진하면 더욱 안정적으로 통합대회가 가능 할 것이다.

1) 현재 관점에서 전문선수뿐만 아니라 동호인선수에 대한 실적관리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전문선수와 동호인선수가 통합된 실적관리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랭킹포인트 제도를 실적관리 방식으로 할 경우 모든 대회출전 등록선수에 대하여 랭킹을 매길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2) 생활-엘리트대회 연계 선진화

(1) 생활체육대회와 엘리트대회 검토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은 생활체육 기반 하에 엘리트선수를 육성하자는 취지가 있었다. 그러나 선수등록제도가 전문선수와 동호인선수로 이분화되어 있어 종목별로 엘리트대회와 생활체육대회가 체육단체 통합 이전처럼 이분화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선수등록제도가 바뀐다고 해도 대회가 그대로 이분화되어 있다면 생활체육 기반 하에 엘리트선수 육성은 쉽지 않다. 현재 회원종목단체는 엘리트대회와 생활체육대회 각각 동일한 대통령기, 국무총리기²⁾, 장관기, 종목협회장기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종목단체도 시도·시군구자치단체장기, 종목협회장기 엘리트대회와 생활체육대회를 각각 개최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전국규모대회 개최계획 상 종목단체의 경우 전체 대회의 약 10%(전문체육대회 613개, 생활체육대회 216개 중 90개)만이 통합대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회일시와 대회형식만 합쳐놓았을 뿐 진정한 연계나 통합대회는 전무하다.

현재 엘리트대회는 경쟁 시스템 감소, 2부리그 하락에 대한 부담, 체육특기자의 2부리그 경기실적 반영 부족 등으로 1부, 2부가 없이 단일 형태로 이루어지며 생활체육대회는 1부, 2부, 3부 등이 존재하지만 종목별, 대회별 요강 표준화는 되어 있지 않다. 특히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제도가 여전히 선수와 동호인으로 이분화되어 있고 종목별 엘리트경기력과 생활체육 경기력이 차이가 많아 단시일 내에 생활체육대회와 엘리트체육대회의 통합을 완성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회원종목단체는 엘리트부의 경기력 유지와 대회 성격유지를 위한 엘리트용 시설확충, 중계방송 및 스폰서 확보, 관중 동원 등에 신경을 쓰면서 생활체육부와의 연계, 통합에 미온적이고 생활체육부는 기존에 자기 방식대로 즐겨왔던 대회를 바꾸거나 하지 못하게 된다는 상대적 박탈감, 그들만을 위한 대회 향수 등으로 분리된 대회를 요청하기도 한다. 또한 유·청소년 연령대의 생활체육대회는 거의 없어 신설이 필요하고 이러한 유·청소년부와 엘리트부, 학교스포츠클럽대회와의 연계 협력, 통합운영

2) 종목에 따라 대통령기 또는 국무총리기가 없는 대회가 있으며 같은 종목 내에서도 정부지원 대회로 엘리트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가 동일하게 있는 경우가 많다.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전국체전과 국민생활체육대축전도 현재 분리 운영되고 있다. 경기인등록규정에 의해 선수등록한 선수들은 전국체전에 출전하고 동호인으로 등록한 선수들은 국민생활대축전에 출전하고 있다. 향후 전국체전은 현재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가 이행되면 고등부가 분리돼 중등부와 함께 학생스포츠축전으로 가게 되어 약 40%의 규모 감소를 겪게 되며, 20세 이상의 대학 및 성인 연령대로 참가자격이 정비된다. 현재 전국체전 자체도 국민들의 관심 미흡, 시도간 과열 심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생활체육대축전의 경우에도 체육단체 통합 전 국민생활체육회 주관의 전국종합체육대회로 진행되어 왔으며 전국체전처럼 엘리트식 시도 대항, 개·폐회식 의전 증가, 엘리트 연계 미흡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

(2) 생활-엘리트대회 연계 추진방안

먼저, 일부 종목을 제외³⁾하고 대부분의 종목은 생활스포츠와 엘리트스포츠 간 수준차이가 많아 중간수준의 브릿지 대회, 수준별 대회, 오픈대회 등이 필요하다. 현재는 전문선수 대상의 엘리트대회가 학생대회, 실업대회 등에서 연간 각각 10개 내외, 동호인선수 대상의 생활체육대회가 연간 수개-수십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수준별로 위계화하고 비워져 있는 수준대회는 브릿지대회로 개최하고 브릿지대회가 개최되면 그 상위 및 하위대회를 연결한 수준별 대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대회가 수준별로 개최되더라도 수준 간 벽을 허무는 대회도 필요한데 축구의 FA컵, 테니스의 전한국선수권대회 등이 오픈대회 성격을 전 종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전국체육대회는 새로운 선수등록제 도입 후 전문클럽선수 참가, 우수한 동호인선수 참가 등으로 문호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전국체전 고등부의 소년체전과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전국체전은 일반부의 확대가 필요(현행 선수부와 생활체육부

3) 엘리트종목이 있으면서 생활체육종목으로도 활성화되어 있는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등은 선수부와 동호인부의 경기력 거리가 좁아지고 있다. 이 경우에도 경기력 거리를 더 가까이 하거나 붙도록 하자는 것으로 축구의 경우 1-2부는 프로부, 2-4부는 전국부, 5-6부는 권역부, 7-8부는 지역부로 재편하는 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레슬링, 조정 등 엘리트체육 특화종목은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먼저 하면서 수준별로 위계화할 필요가 있고, 파크골프 등 생활체육 특화종목은 굳이 엘리트종목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등 출전자격자 확대 등)한 상황인데 이것을 전문클럽선수 참가, 우수한 동호인선수 참가로 메우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전국체전은 그들만의 대회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바, 종목동호인들의 참여확대를 통해 국민관심 제고, 국민참여 증가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민생활체육대축전은 종합대회 형식은 유지하되 종목별 대회개최, 폐회식 의전 최소화, 공식적 시상식 자제 등을 통한 스포츠체험, 스포츠향유의 장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 선진화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는 올림픽 시상대를 꿈꾸는 어린 연령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의 국가대표후보사업-청소년대표사업-체육영재사업-꿈나무사업이 그것인데, 이 사업들은 필요나 목적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점, 사업의 위계화 부족, 사업별 효과성 미흡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1)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 현황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는 국가대표 하위에서 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연결선 상에 있는 연령별, 수준별 선수공급체계이다.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는 처음에 국가대표 후보사업-꿈나무사업의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비인기종목 활성화 차원의 청소년대표사업이 포함되어 3단계가 된 이후 체육영재사업이 추가되면서 4단계 사업이 되었다. 이에 사업별 위계화가 안되고 연령별 중첩도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명도 연계성이 부족하다. 국가대표후보 하에 청소년대표가 있고, 더 어린 연령으로 보이는 체육영재가 꿈나무 위에 있으며, 국가대표후보사업은 국가대표와의 위계화로 수준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청소년대표는 국가대표후보 사업과의 수준 개념보다는 청소년이라는 대상의 대표 성격을 갖고 있다. 체육영재는 또 다른

4) 국가대표후보사업은 1982년, 꿈나무사업은 1993년, 청소년대표사업은 2010년, 체육영재사업은 2015년에 시작되었다. 청소년대표사업은 비인기종목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체육영재사업은 체육인재육성재단 설립을 위한 핵심사업 개발차원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체육영재사업은 대한체육회가 아닌 체육인재육성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했으므로 경기단체가 아닌 대학이 사업주체가 되었고 이로 인해 경기력 제고성과는 미미하였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이 폐지되고 체육영재사업은 대한체육회로 흡수되어 꿈나무 하위사업으로 있다가 경기력 미흡으로 꿈나무 위의 우수영재사업으로 재편되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경기력 위계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자리를 못 잡고 있다.

꿈나무로 볼 수 있으며 청소년후보사업처럼 위계화 개념도 아닌 재능 있는 선수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다.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는 현재 국가대표후보사업-청소년대표사업-체육영재사업-꿈나무사업으로 내려갈수록 선수 수 담보, 직접 메달가능성 미흡으로 인한 대한체육회 관심 부족, 대한체육회 사업이라는 인식에 따른 경기단체의 관심 부족 등이 문제가 된다.

메달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국가대표선수 하위의 국가대표후보사업이 더 중요하고 청소년대표사업-체육영재사업-꿈나무사업으로 갈수록 메달 기대 수준이 감소해 체육단체의 관심은 감소한다. 또한 축구, 야구, 골프 등 프로종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인기종목은 어린 연령으로 내려가도 등록선수 수가 적은 반면 국가관리 수준의 경기력을 가진 선수가 적기 때문에 수급하기도 쉽지 않다. 저출산에 선수 수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대한체육회, 경기단체가 기존의 엘리트 등록선수만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향후 학교·지역스포츠클럽의 유·청소년 회원이 국가관리 하위육성체계에 진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국가대표 후보사업-청소년대표사업-체육영재사업-꿈나무사업의 종목 연계성 확대, 학교·생활스포츠클럽의 풍부한 저변 하의 엘리트선수육성, 사업간 수준별 위계화 및 상위사업 진출을 확대 등이 강화되어야 국가대표 하위사업으로서 그 역할과 위상이 제고될 수 있다.

또한,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는 학교운동부라는 원소속이 있고 그 원소속의 지도자에게 훈련지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대표후보사업-청소년대표사업-체육영재사업-꿈나무사업 대상자가 되어 사업별로 채용된 지도자에게 배울 경우 원소속 지도자와의 훈련연계성이 낮아진다는 점, 방학 중 단기 합숙훈련 및 스포츠과학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 등에서 훈련효과도 크지 않은 편이다. 학기 중에 이은 방학 중의 훈련과다로 정서적 성장기, 기량발전기의 선수들에게 학습권, 휴식권 침해 등도 우려된다. 또한, 방학 중 집체훈련이 합숙훈련으로 이루어지는데 열악한 숙박시설 및 합숙환경, 사업지도자의 엄격한 훈련지침 등 인권적 측면에서 문제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사업이 초등연령부터 시작되는데, 연령별 국가대표 이름을 주어 어린 연령부터 조기 전문화⁵⁾되고 다양한 진로가 제한되는 등 문제도 제기된다.

또한, 종목별 경기단체에서 선수를 선발하여 대한체육회에 추천하지만 경기단체는 대한체육회 사업으로 생각하여 관심이 저조하고, 사업들 간의 사업비나 예산지원 액도 달라 사업효율성도 높지 않은 편이다.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에 대한 스포츠과학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경기력 제고에서 훈련시설, 전문지도자, 훈련프로그램에 이어 스포츠과학적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이제는 훈련량 이상으로 훈련의 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 중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스포츠과학 지원을 받는 사업은 꿈나무사업 뿐이고 그것도 선수선발에 있어서의 경기력, 체력, 체격, 심리 측정 그리고 선발인원에 대한 향상도 평가 정도이다. 이러한 스포츠과학지원사업도 수탁연구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연간 비용이 3억 수준이다. 꿈나무부터 국가대표까지 기술, 체력, 체격, 심리 등 측정 및 분석자료는 종목-연령별 변화추이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로 활용 가능하며, 향후 종목 특성과 우리나라 선수들의 종목별 체격, 체력, 기술, 심리 변화를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가치가 높다. 특히 선수선발의 투명성 제고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에 대한 스포츠과학적 지원이 필요하다.

(2)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 개선방안

현재 국가대표 하위체제는 국가대표후보사업-청소년대표사업-체육영재사업-꿈나무발굴사업의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가대표후보사업-유망주사업-꿈나무사업의 3단계로 정비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사업재편은 사업간 연계성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성격의 사업을 단일 형태의 위계화 된 사업으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 국가대표 발탁이 가능한 국가대표후보사업은 경쟁체제를 강화하여 국가대표후보사업 내의 선수마다 경기력 수준, 잠재력 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별적 지원(최소한 3단계 이상)을 하며, 유망주사업은 국가대표후보사업보다는 덜 경쟁적인 체제로 운영하되 유망주사업 내의 선수마다 경기력 수준, 잠재력 수준 등을 고

5) 조기 전문화란 올림픽메달을 획득하는 연령에 비해 종목전문화가 빨리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육상의 경우 대부분 고등학생 이상에서 평균적인 전문화가 필요한데, 소년체전이나 종별선수권 초등부,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 때문에 세부종목을 전문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100미터 전문선수, 높이뛰기 전문 선수가 되는 것 또한 신체적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조기전문화는 선수생명을 짧게 하고 훈련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려하여 차별적 지원(최소한 2단계 이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꿈나무사업은 보다 덜 경쟁적인 체제로 운영하되 현재 운동부뿐만 아니라 학교·지역스포츠클럽 등 보다 넓은 저변에서 선수를 선발하도록 하고, 다만 경기력 기준치는 상향 조정하여 국가 관리의 의미와 넓은 저변에서의 선발, 우수선수 발굴이라는 기준에 부합되도록 추진한다.

기존의 사업방식은 사업별, 종목별 엔트리 내에서는 경기력이나 잠재력에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차별적 지원이 안되어 있었다. 여기서 차별적 지원이라고 할 때 그 기준은 같은 연령대의 세계기록이나 랭킹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지원의 차별정도를 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선수가 사업별, 종목별 엔트리 내에 없다면 선수선발은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이 종목별 엔트리를 정할 때에도 최소한 연령대의 세계기록이나 랭킹과의 적절한 간극 내에 있는 선수를 대상으로 선발할 필요가 있다. 단지 기계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별, 종목별 엔트리를 정하는 것은 후보-유망주-꿈나무사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로 효율성이 낮을 것이다. 더욱이 사업별, 종목별 엔트리에 포함되었다고 할지라도 기량평가를 통해 엔트리의 지속과 제외를 결정하는 것도 경기력 제고나 선수로서의 성장자질 숙고에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의 대상자는 모두 스포츠과학적 지원을 받도록 한다. 현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국가대표에 대한 스포츠과학적 지원을 하는 데에도 인력부족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인력보강과 조직정비, 스포츠과학 지원계획과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가대표 하위체제로 향후 거론되는 국가대표후보사업-유망주사업-꿈나무사업의 대상자는 대부분 학생선수이다. 이러한 국가대표후보사업-유망주사업-꿈나무사업은 대부분 방학 때 집체 합숙훈련으로 이루어지는데 인권적인 부분과 학습권, 휴식권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가대표 하위체제 선수들은 경기단체 주관의 자체훈련을 원칙으로 하되 진천선수촌의 수용인원, 훈련시설의 현대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진천선수촌을 활용⁶⁾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선수로서 학습능력과

6) 일본의 국가대표선수촌(National Training Center: NTC)은 국가대표선수 뿐만 아니라 주니어선수 육성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소양경험이 증진될 수 있는 인력과 프로그램이 지원되도록 한다. 해외전지훈련 등의 경우에도 인권침해 예방, 학습능력 개선 등이 지원되도록 한다. 또한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 전반의 의학적, 과학적 지원을 통해 선수별 선수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선수성장발달에 맞는 훈련, 종목 적합도 검사를 통한 종목유지·전환검토, 선수기량·잠재력 발전·연령증가 등에 따른 상급사업으로의 승격 등을 추진한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판단에 의거,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I의 내용과 같이 권고한다. 위원회는 기존 엘리트스포츠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 폐단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민주적이며, 자율적인 스포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 혁신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판단한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진천선수촌 운영 방안 개선, 경기력향상연금제도 및 체육요원제도의 합리적 개편, 선수육성체계 선진화 등 엘리트스포츠시스템의 종합적 개혁 방안을 수립, 실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권고한다.

2019년 8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 문경란

위원 김화복

위원 류태호

위원 배복주

위원 서정화

위 원 서 현 수

위 원 원 민 경

위 원 이 대 택

위 원 이 영 표

위 원 이 용 수

위 원 이 용 식

위 원 정 용 철

위 원 정 윤 수

위 원 함 은 주

위 원 흥 덕 기

< 권고안에 대한 이행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은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 육성체계 선진화”를 주문한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에 의견을 같이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스포츠혁신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가운데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관계기관 협의 및 실무 준비를 할 계획임

1.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권고

1) 진천선수촌 개선

○ 진천선수촌 인권 보장 강화

- 관련규정 개정(안) 마련('19.3/4분기~4/4분기) 및 개정('20.1/4분기)
- 인권상담실 개선('19.3/4분기 ~'20.1/4분기)
- 학생국가대표선수 학습권 실태조사('19.3/4분기~'20.1/4분기)
- 학습지원센터 설립 계획 수립('19.3/4분기~4/4분기) 및 운영 ('20.1/4분기~)

○ 국가대표지도자 처우개선 및 평가 합리화

- 지도자 처우개선 이행계획 수립('19.3/4분기~4/4분기) 및 적용 ('20.1/4분기~)
- 지도자 평가기준 마련('19.3/4분기~'20.3/4분기), 실행('20.4/4~)

○ 진천선수촌 스포츠과학 지원 시스템 효율화

- 훈련과학협의회 운영계획 수립('19.3/4분기~4/4분기) 및 이행 ('20.1/4분기~)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과학 지원기능 강화 계획 마련 ('19.3/4분기~'20.1/4분기)
- 스포츠과학 지원기능 강화 관련 정월 및 예산 협의('20.2/4분기 ~'20. 4/4분기)
- 스포츠과학 지원기능 강화(~'21. 2/4분기)

2)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 개편

- 세부실행계획 수립('19.3/4분기~'20.3/4분기)
- 관련 규정 정비('20. 2/4분기 ~ '20.3/4분기)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이행계획 단계적 적용('21.1/4분기~)
- 체육인 실태('20.1/4분기 ~ 3/4분기) 및 필요 사업 수요 조사
- 체육인 복지 확대 계획 수립 및 추진(~ '21. 2/4분기)

3) 체육요원제도 개편

-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 TF' 운영(~'19.3/4분기 예정)
-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계획 이행(부처간 합의된 일정에 따름)

2. 선수 저변확대와 스포츠과학을 접목한 선수육성체계 선진화 권고

1) 선수등록제도 개편

- 경기인등록규정 개정('19.3/4분기~4/4분기)
- 선수등록제도 개선(회원등록제도로 통합) ('20.1/4분기~3/4분기)

- 선수경기이력시스템 개발 운영을 위한 기초 연구('20.1/4분기~4/4분기)
- 선수경기이력시스템 개발('21.1/4분기~4/4분기)
- 선수경기이력시스템 개시('22.1/4분기~)

2) 생활-엘리트대회 개편

- 가능한 종목부터 대회 통합(오픈대회 개최, 디비전 대회 등) 추진 ('20. 1/4분기~)
- 전국체전에 일정 수준 이상의 동호인 선수 참여 가능토록 개선 ('21. 1/4분기~)

3)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 개편

- 관계기관, 종목단체 의견 수렴('19.3/4분기 ~ 4/4분기)
- 세부 실행 계획 수립('20.1/4분기)
- 세부 실행 계획 단계적 적용('20.2/4분기~)